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37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를 위한 조치 요청(안 제48조의2 제7항 신설 등)	3
2.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안 제48조의7 신설)	7
3. 침해사고 관련 과태료 상향(안 제76조 제1항 신설 등)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회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6. 19.

다. 회 부 일 : 2025. 6.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정부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태의 위험성과 2차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경보·예보를 실시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

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 2제7항, 제48조의7, 제76조제1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를 위한 조치 요청(안 제48조의2 제7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사고 대응 관련 업무에 침해사고 ‘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제7항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제1호)
 -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²⁾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제2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기통신업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제3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생략) 2. 침해사고의 <u>예보·경보</u> 3.·4. (생략) ② ~ ⑥ (생략) <u><신설></u>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예보·경보·통지</u> 3.·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사고의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u>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다. 검토사항

- 안 제48조의2는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및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침해사고 예보·경보·통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려는 것임.
- 다만 침해사고 ‘예보·경보’의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침해사고 예고·경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⁴⁾, 현행법상으로도 개정안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침해사고 ‘통지’의 경우, 통지의 대상이 전체 국민인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만약 통지의 대상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한다면 통지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보다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 다수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4)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침해사고 예보·경보의 전파

5) 의안번호 제2211392호(인요한의원 대표발의), 제2211402호(이상희의원 대표발의)

2.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안 제48조의7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8조의7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함(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7(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①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u>

현행	개정안
	<u>치를 하여야 한다.</u> ②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다. 검토사항

- 안 제48조의7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관련 규정들은 침해사고의 신고, 원인 분석, 복구 및 재발방지 등 침해사고 자체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와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6),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7)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침해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위약금 면제 등을 규정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8),

6)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7)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의안번호 제2210170호(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제2210314호(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제2211546호(민병덕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율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필요한 조치’에 어떠한 조치가 포함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조치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침해사고 관련 예보·경보의 발송 및 이용자 피해의 구제 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10586호,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9) 의안번호 제2210762호(이해민의원 대표발의)

3. 침해사고 관련 과태료 상향(안 제76조 제1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신설 등)
 - 제48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48조의4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조치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76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
 - 제48조의2 제4항에 따른 침해사고 정보 제공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8조의4 제6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48조의4 제6항에 따른 침해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한 자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과태료) <신 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개정안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의5. (생략)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 12. (생략)	② ----- ----- ----- ----- -----. 1. ~ 6의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7.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현행	개정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생략)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 25.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 ----- ----- -----. 1. ~ 10. (현행과 같음) <삭제> 11의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2의2. ~ 25.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 ----- ----- -----.

다. 검토사항

-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과거 동 사고와 관련된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음¹⁰⁾.

- 침해사고를 신고하였다면 정부가 관련 조사를 통해 악성코드를 발견하여 조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법률상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침해사고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벌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잃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를 다른 위반행위의 경우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침해사고 미신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시에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¹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²⁾.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T 침해사고 원인분석 결과 및 조치방안 발표', 2025.7.5.

11)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생략)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시정명령 미이행)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¹³⁾,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¹⁴⁾에 대한 침해 사고 발생 시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⁵⁾.

12)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13)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

2.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들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서생략)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의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

15) 제14조(복구조치)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생략)

2.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조사 미협조)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한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⁶⁾,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통신시설 관리상태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⁷⁾.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정안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어¹⁸⁾, 현행법상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실태를 보다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성도 있어 보임.

○ 종합하면, 과태료 상향에 대해서는 침해사고 관련 의무 위반에 따른

16)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생략)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3.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단서생략)

17) 제43조(보고·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설비 설치·운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침해사고 신고의무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2025년 7월 침해사고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진행 중임

피해의 정도, 현행 정보통신망법 규정 및 타 유사 입법례, 현행 과태료 부과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타 법률규정의 사례와 비교할 때 위법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